

지정토론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올바른 제도 정착에 힘쓰기를



채근직 변호사
채근직 법률사무소

저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그 동안 법으로 규정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의 시행 절차 미비로 말미암아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할 당시의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치과의사계는 지난 40여년간 누가 보아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한 전 세계 치과의사들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소비자들인 국민들 역시 수준높은 치과 진료를 받음에 한계가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 김광남 서울대 치대 학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아 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제가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1996. 7.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드디어 1998. 7. 25.에 위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법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 등 작업은 해당 행정관청의 헌법적 의무이고, 비록 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나 이익집단이 있더라도 이는

시행의 지체를 정당화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헌결정이 나고서도 무려 4년 반이 지난 이제서야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관계법령안을 만들었고, 그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비록 대단히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많은 치과의사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일이며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관계법령안들을 보고 느낀 몇 가지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되, 세밀한 기술적 부분은 여기 참석하신 치과의사 분들의 영역이라 사려되어 생략하고, 법조인으로서, 또 저 역시 가끔 치과에 들르는 환자의 입장에서 느낀 두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만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이 조항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었는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으며, 지금 이 부분을 고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도의 즉각적 시행을 바라는 측과 제도의 시행을 원치 않는 측 사이의 타협에서 나온 기형적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그 전문자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할 정도라면 대단한 기본권 제한이라 할 것인데, 이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타 직종과 비교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을 지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치과위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2차, 3차 진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편법을 통하여 그 분야의 전문의를 알아내어 가는 수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도저도 아니면 전혀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치과위원에 가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발생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 치과위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하여야 하는 환자가 일반 치과위원에 내원하였을 때, 치과위원의 입장에서 그 발치가 자신보다는 구강외과 의사의 진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라는 불법적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이 발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담당 치과위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환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단히 불충분한 진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야간 1차 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개정되어 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둘째, 제가 이번 시행안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인데, 기존 치과위원이나 수련의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치과위원이 기 수련한 수련과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에 대하여까지도 2008.까지 한시적으로 전속전문의로서의 자격 외에는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수련과정은 엄격한 법규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서 그 수련과정을 개정법에 의한 수련과정으로 다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며, 경과조치를 두어 일부 치과위원들에게 수련과정이나 전문의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등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여 심지어는 전문의 과정을 지도할 치과대학 교수들조차도 학생들과 같이 모든 수련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치과위원 전문의가 될 수 있다거나, 선진 외국에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밟

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위원도 아무런 예외없는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평등의식에서 비롯된 제도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치과위원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치과위원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큰 문제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위원에 관련된 기본 제도를 치과위원들간의 합의가 없이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전문가 집단인 대한치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공감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유를 합하여도 40년간의 지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도 4년 반이나 지체를 함으로써 위헌 상황을 방치한 데 대한 정당화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치되, 토의 결과 치과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무 행정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올바른 취사선택을 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오랜 기간 제도 시행을 미뤄 온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다분히 위헌상태를 방치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65조 소정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탄핵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의 개혁이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위원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치도록 한 이후 단호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장기적으로 올바른 치과위원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고,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작부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법, 여기 모이신 치과위원 분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합쳐 조속히 제도 시행을 하여 주시고 올바른 제도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